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심리불속행 판결 시 판결이유 기재〉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심리불속행 판결 시 판결이유 기재	3
참고자료 1. 상고심 관련 통계	10
참고자료 2. 상고제도 변천 요약표	11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4.

나.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나 가사·행정·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될 뿐 판결이유가 실시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위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심리불속행 판결 시 판결이유 기재 (안 제5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현행법 제4조¹⁾에 의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도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에 따른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

- 1)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u>아니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	<u>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1994년 7월 27일 제정되어 1994년 9월 1일 시행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은 상고심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였음. 이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의 사유(즉, 심리속행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²⁾.
- 1990년 9월 1일 국민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 등을 받아왔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상고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건처리 지연이나 권리확정 지연 목적으로 상고제도가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음³⁾.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한 「상고심법」의 제정이유에서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가 행하여짐에 따라 대법원의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음⁴⁾.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2판)」, 박영사(2018), p. 905

3) 대법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2021. 5. 21., p. 19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769호) 제정이유

- 「상고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같은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

또한, 「상고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심리불속행 제도와 심리불속행 판결의 판결이유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는 여러 번 문제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07. 7. 27. 2006헌마551 등).

다만,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3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음. 위헌의견은 「상고심법」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헌재 2007. 7. 27. 2006헌마551).

- 개정안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틀 내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 중 약 7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판결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판단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이라거나 특정 소송대리인 등에게 편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⁵⁾도 있는 상황임.

5) 서울지방법원호사회,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9. 11. 23. p. 55, 61.

개정안과 같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도 판결이유를 적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고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고심 재판의 공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이유 적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다만,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하고,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고사건의 급증에 대응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대법원이 최종심과 법률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

해당 사안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대법원에 연간 4만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어 대법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상고심사제⁶⁾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규모 확대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대법원이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지난 2023. 1. 25.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의안번호 ZZ21141)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상고가 제한되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서 대법관 및 상고사건의 수를 고려할 때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고심 재판의 엄청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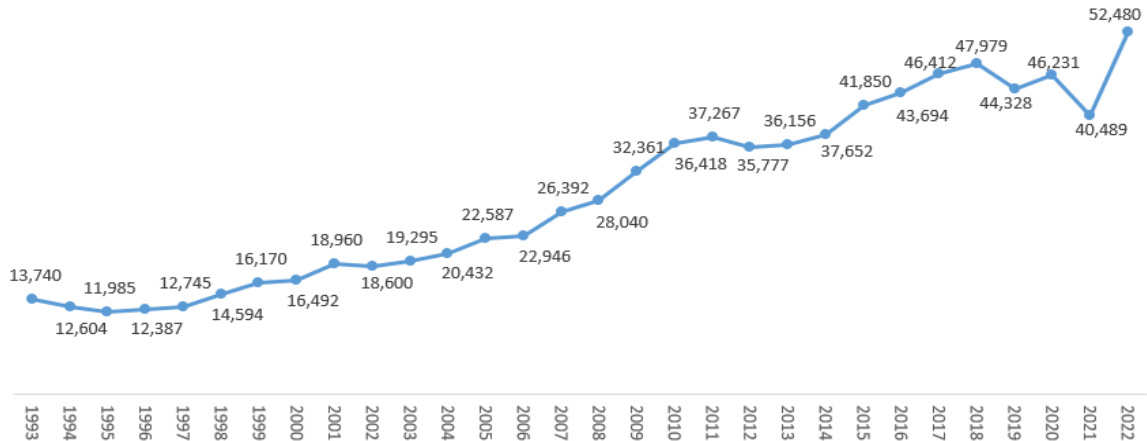
심리불속행판결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크게 효용성이 있지 않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개정안과 같이 심리불속행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고허가제의 도입,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의 증원, 심리속행사유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 상고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상고심 관련 통계

□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건수 추이(1993~2022년)



자료: 법원행정처, 연도별 사법연감

□ 최근 5개년 상고심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

(단위: 건, %)

연도	민사본안			가사본안		
	처리(A)	심리불속행 기각(B)	비율(B/A)	처리(A)	심리불속행 기각(B)	비율(B/A)
2019	12,815	8,916	69.6	682	592	86.8
2020	11,224	7,839	69.8	577	498	86.3
2021	11,878	8,631	72.7	689	583	84.6
2022	12,008	8,326	69.3	706	601	85.1
2023	12,381	8,727	70.5	701	588	83.9

연도	행정본안			특허본안		
	처리(A)	심리불속행 기각(B)	비율(B/A)	처리(A)	심리불속행 기각(B)	비율(B/A)
2019	3,496	2,750	78.7	242	188	77.7
2020	3,187	2,459	77.2	233	164	70.4
2021	3,255	2,524	77.5	161	111	68.9
2022	4,172	3,108	74.5	138	98	71.0
2023	3,677	2,668	72.6	165	131	79.4

주) 민사본안 사건 수는 과다 소송 제기 사건 수 제외한 수치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재정리

참고자료 2

상고제도 변천 요약표

법원조직법 제·개정 시기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의 재판부	비고
1948. 5. 4. (과도 법원조직법)	대법관 11인 이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전원연합부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	대법관 9인 이내		고법 상고부 폐지
1959. 1. 13.	대법관 9인 이내 + 대법원판사 11인 이내	대법관 1인 이상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1961. 8. 12.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 9인	전원합의부만 둬	고법 상고부 설치 (1심 단독사건) '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명칭 변경
1963. 12. 13.	대법원장 외 12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 + 전원합의부	고법 상고부 폐지
1969. 1. 20.	대법원장 외 15인		
1981. 1. 29.	대법원장 외 12인		상고허가제 실시 (1981. 3. 1.)
1987. 12. 4. 이후	대법원장 외 대법관 13인		'대법관'으로 명칭 변경 상고허가제 폐지 (1990. 9. 1.) 심리불속행제 실시 (1994. 9. 1.)

자료: 대법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2021. 5. 21., p. 8